

日本國民이 수행해야만 할 責任이란

—특집 “戰爭責任”의 決着을 어떻게 짓는가’에서

태평양전쟁, 그후 50년이 훨씬 지나고 세기가 바뀌어도 전쟁책임은 일본의 원죄처럼 다시 묻어진다. 외국의 공세도 있고 국내의 추궁도 있다.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선분(線分)은, 국가/개인에게서 국가/개인에게로, 무수히 줄이 쳐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수렴할 수는 없으며, ‘유일한 바른 역사인식’보다도, 필요한 것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 안에서, 앞으로의 평화와 국제질서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쪽에 서는 일, 관계 여러 나라의 역사인식과 조화하면서도, 일본 독자적인 역사인식’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라는……. 〈J.F〉

하시즈메 다이사부로오

橋爪大三郎

(東京工業대학 대학원 교수)

전쟁책임은, 공중에 떠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책임은,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냐 하는, 그 물음의 구조와 더불어 있다. 그리고, 왜 책임을 묻게 되느냐 하는, 근거와 결부되어 있다. 책임을 묻는 주체/물음을 받는 주체/그 근거, 그것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전쟁책임을 생각하는 조리가 보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쟁책임이라는 말은, 모호하게 사용되어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책임이란 무엇이나, 전쟁이란 무엇이나, 하는 순서를 가지고 생각해나가기로 한다.

責任이란 무엇인가

책임이란 원래가, 사회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무슨 일인가를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그 원인을 빚어냈다고 생각되는 인물에게 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인물은 항의를 인정하고, 행동을 고칠지도 모른다.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고, 설명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문답을 하는 동안에, 책임의 소재(부당했다면 그것은 누가 빚어낸 일인가)가 분명해진다.

누군가가 어떤 인물에게 일을 맡긴 것 같은 경우에는, 책임의 소재는 비교적 확실하다.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그 인물의 의무일 것이다. 그것을 안 하면,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인민이 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그런 케이스도 이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다.

책임을 묻는 기본틀(근거)로서, 가장 합의를 얻기 쉬운 것은, 법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A가 B에게, 다른 경우에는 B가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은 권리나 권한을 확정하고, 사람들의 정당한 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정해놓은(라고 믿어진다) 것이므로, 그것이 어겨지면 ‘부당하다’는 느낌이 든다. 법의 엄밀한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종종, 책임을 추궁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법 이외에 도덕도,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된다. 보통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런 추궁을 받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도덕적인 부담을 갖게 된다.

戰爭이란 무엇인가

다음에 전쟁이란 무엇일까. 전쟁은, 근대에서는, 국가의 행동이다.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집단과 집단,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가 종종 무력으로 싸웠다. 그것도 전쟁이다. 전쟁에서는, 보통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이나 도덕이나 물은 효력이 정지되고, 무력으로 모든 것을 결판을 낸다. 전쟁의 근원에 있는 것은 분쟁(利害의 대립)인데, 그것이 보통의 절차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전쟁이 되지는 않는다. 바로 보통의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를 벗어난 무력에 호소하는 것이다. 무력으로 패배한 쪽은, 이긴 자의 의사를 따른다. 고대에는 패자는 노예가 되거나, 살해되거나 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패전을 함으로써, 그 책임을 졌다.

전쟁은 단체로 싸우는 것이므로, 지휘 체계가 있다. 전쟁의 수행방법이 서투를 경우, 국왕이 지휘관의 책임을 묻기도 하고, 지휘관이 장병의 책임을 묻기도 할 것이다. 군대는 전쟁이라는 업무를 맡은 것이므로, 업무의 수행방법이 서투르면, 책임을 추궁 받는다. 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휘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기도 한다.

전쟁으로 도시나 농지가 파괴당하거나,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아무런 보상(補償)도 없는 것이 고대로부터의 습관이었다. 전쟁은 자연재해와 같은 것으로서, 민법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군대는 필요하다

면, 식량이나 자재나 인원을 주저 없이 징발했다.

전쟁의 수행방법이 관습(일종의 국제법)으로서 확립되자, 그에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문제가 된다. 가령 중립, 중립을 선언하면 어느 쪽에도 가세하지 않고, 설사 패잔병이 도피해오더라도 쫓아 보내야만 한다. 그렇게 중립을 지키는 집단을 공격하면 불법행위로서 책임을 추궁을 당한다.

戰時國際法

절대왕정의 시대에, 전쟁을 둘러싼 국제법규와 관습이 서서히 확립되어졌다. 군대는 제복을 착용한다, 민간인(비전투원)은 전투에 참가할 수 없는 대신에 보호를 받는다, 포로의 권리와 의무 등.

근대국가는 무력을 독점하고, 군대 이외의 단체가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절대왕정의 군대는 용병주체(傭兵主體)였으나, 근대국가는 병역을 국민의 의무로 정했다. 징병제이다.

근대국가로서는, 전쟁은 국익(국민의 이익) 추구의 수단이다. 국가는 전쟁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전쟁에 지면, 국익의 추구에 실패한 것이 되며, 국민은 큰 불만을 가진다. 그래서 국민은, 정부를 비난·공격한다. 패전은 종종 정변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상대국의 정변을 노리고 전쟁을 도발하는 케이스도 있다.

국가가 전쟁을 치를 때에 따르는 룰이 전시국제법(戰時國際法)이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라, 확실한 제재의 메커니즘이 없다. 국내법이라면,

불법행위가 있으면 대항할 수가 있고, 재판이나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법을 관철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해도, 경찰이나 재판소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국제법은 법이란 말이나 하는 의문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법리학자 H.L.A. 하트는 '법의 개념' (번역서:미미즈書房)에서, 이 의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제제가 없더라도 국제법은 법이다. 국제사회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제사회의 질서(를)를, 법으로서 의식하며, 그것을 따르고자 한다. 위반하면 다른 국가들이 보복을 시도할 것이고, 강국이 전쟁을 걸어오는 일도 각오해야만 한다고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강국(霸權國)의 행동이 법인 것이다.

국제사회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끼리의 실력에 의한 분쟁해결, 즉 전쟁도, 무질서한 것은 아니다. 전시국제법은, 국가가 전시에 따르는 법이다. 그 일부는 관습법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헤이그 육전규정(陸戰規定) 등의 조약의 형태로 성문화한 것이다. 국가는, 자국의 군대가 국제법에 따라서 싸우는 데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것은 다른 국가에 대한 의무이다.

국외에서 싸우는 일도 있는 군대에게, 통상의 국내법과는 다른 군법이라는 것이 있으며, 사단이나 전군의 레벨로 군사법정이 설치된다. 그리고 수시로, 헌병이 장병을 단속하며, 위반행위가 있

으면 체포해 재판에 회부해 처벌한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제법에 위반한 행위(전쟁범죄)가 분명해지면, 전승국이 패전국의 군인을 재판에 회부해 처벌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東京裁判의 의미

일본이 최근 관련된 전쟁, 즉 만주사변(滿洲事變), 일화(日華)사변(중일전쟁), 아울러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에서는, 전쟁범죄는 어떤 식으로 재판을 받았던 것일까.

공동국제군사재판(즉 東京裁判)에서는 A급, B급, C급의 3종의 전쟁범죄가 재판을 받았다.

이중 B급 전쟁범죄라는 것은, 전시국제법에 위반하는 전쟁범죄행위를 부하에게 명령한 자, C급 전범이란, 그 명령에 따라 시행한 자를 말한다. 양쪽 다 이미 확립되어 있던 전시국제법에 대한 위반행위(전쟁범죄)가 죄로 추궁되었다. 더욱 B급, C급 전범은 토오쿄오(東京) 재판뿐 아니라,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 각지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런 재판들은 증거조사가 엉성한 등 오심의 가능성을 포함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근거가 되는 국제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해 A급 전범은, 인류에 대한 죄, 평화에 대한 죄 등, 뉘른베르크재판에서 나치스 독일의 전쟁지도자의 죄를 추궁한 것과 같은 '국제법'이 근거가 되었다. 토오쿄오재판에서는, 토오조오 히데키(東條英機) 전수상 이하 28명이 A

급 전범으로 기소되어, 25명이 유죄(그중 7명이 사형)가 되었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① '인류에 대한 죄' '평화에 대한 죄'는, 전쟁이 개시되었을 당시, 확립된 '국제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사후법에 의한 재판이 아닌가.

② 설사 그와 같은 국제법이 있었다 해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타국을 침략할 의도에 의거해 계획된 전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토오쿄오재판에서의 범죄의 입증도 불충분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에서 토오조오 히데키 전수상 이하 A급 전범의 유죄는 확정되었다. 이 재판의 정당성과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독립(전후 일본의)의 조건으로도 되어 있었다. A급 전범의 유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국민의,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①의 점에 대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1928년에 부전(不戰)조약이 조인되었으며,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론이 성립될지도 모른다. 다만, 적어도 일본의 지도자는, 전쟁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었다. 일본이 수락한 포츠담선언에는, 전쟁범죄인의 처벌이 밝혀져 있었으나, 그것은 종래형의 전쟁범죄(B, C급 전범)를 재판한다는 의미로서 이해되었을 것이다. A급 전범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토오쿄오재판과 그 판결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천황이 재판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

문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中國에 대한 補償은 모호하게 決着

그러면, 일본의 전쟁책임이란 무엇인가.

고전적인 전쟁관에 입각한다면, 전쟁을 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이며, 불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른바 전쟁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전쟁의 방식이 전시국제법에 위반했을 경우만, 위반한 군인(위법한 명령을 한 지휘관이나, 실행한 부하 장병)이 전쟁범죄를 추궁 받으며, 처벌을 당할 뿐이다. 일청전쟁, 일로(日露)전쟁은, 이같은 전쟁관 아래 서로 싸웠으며, 아무도 전쟁책임을 문제로 하지 않았다.

전쟁은 강화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끝난다. 일청전쟁에서는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이, 일로전쟁에서는 포츠머스조약이 맺어졌다. 강화조약은, 배상이 따르는 일이 있다. 전승국이 패전국에 대해 영토의 할양이나 배상금 등을 과한다. 일청전쟁에는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일로전쟁에서는, 위태로운 전승이었기 때문에, 배상금을 받아내지 못했다. 그 때문에 불만을 품은 국민이 소동을 일으키고 불을 지르는(火攻) 사건도 일어났다.

배상은, 패전국의 전쟁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배상은, 승자가 패자로부터 전리품을 탈취하는 고래의 관행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패전국의 책임이라고는 생각하

기 어렵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막대한 배상이 과해졌기 때문에, 나치스가 지지를 모아, 결국 또 한번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배상은 패자측에게 원한을 남기며, 새로운 전쟁의 씨앗을 뿌린다. 그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에 배상을 과하는 방식은 주류가 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런데, 1931년의 만주사변, 1937년의 일화사변 이후, 1945년까지, 중국대륙에서 방자하게 행동한 일본에는 배상책임이 없는 것일까. 일본으로서 결정적인 것은,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蔣介石) 총통이, 대일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었다. 만일 장총통이 배상에 구애했다면, 일본은 응할 수밖에 없었고, 전후의 부흥은 훨씬 곤란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도 대일국교회복을 할 때, 이에 준해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제원조는, 이 배상에 대신하는 함의(含意)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중국에 끼친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모호하게 결착이 되어진 것이다.

侵略戰爭이었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재판한 토오쿄오재판의 기본틀은, 고전적인 전쟁관은 아니었다. 국제연맹 이래의 새로운 전쟁관에 입각한 것이다. 그것은, 전쟁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먼저 전쟁을 시작한 측에게 개전책임을 묻는다. 그러므로 일본에는, 개전책임을 있다는 것이었다. 그

리고, 개전의 의도는 침략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고전적 전쟁관인 경우, 전승국은 패전국으로부터 배상을 받고 결착이 된다. 개전책임을 묻거나 윤리적인 전쟁책임을 묻거나 하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새로운 전쟁관인 경우,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패전국의 개전책임을 비난하고, 패전국의 윤리적인 반성을 요구한다. 가령,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침략 전쟁이었다”고, 다음 세대에게 역사의 교과서에서 가르칠 것을 요구한다.

일본은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것일까.

대만(臺灣:타이완)의 영유, 한국의 병합, 만주사변, 일화사변, 대동아전쟁까지, 각각 그 성격이 다르다. 대만은 고전적인 전쟁관이 지배적이던 시대여서, 일청전쟁의 배상으로 청국한테 할양을 받았다. 한국의 병합은, 상당히 무리한 식민지화였으나, 일본은 열강 여러나라에 사전공작을 했으므로, 국제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곧 당시, 그 정도로 무리한 일을, 다른 나라들도 한 것이다. 만주사변(滿洲國의 건국)은, 일본의 ‘단독행동’의 산물이지만, 기성사실이 되었다. 리튼 조사단(번역주: 滿洲事變에 대한 국제연맹조사단, 1933)은, 일본의 입장에 일정한 이해를 보였다. 미국은 남만주철도에 자본참가를 신청해왔다. 3국동맹과 불가침조약을 맺은 독일이나 소련은 만주국을 승인했었다.

일화사변(중일전쟁)은, 가장 정당화하기 어려운 전쟁이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군사적·영토적 야심을 알아차렸다.

일본의 지도부는, 고전적인 전쟁관에 입각해서, 중국과 보통 있는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사변(事變)’이라고 하며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일본측, 중국측 쌍방의 형편 때문이다(‘전쟁’인 경우는 일본은 軍需물자의 수입을 할 수 없어지고, 중국은 군사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중국으로서 보면, 자국의 영토에 멋대로 일본의 군대가 들어와, 점령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었으므로, 침략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측에, 토오쿄오재판이 입증하려 한 것 같은 계속적으로 일관된 침략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쟁목적이 최후까지 모호한 채로였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전쟁을 끝내려는 행동을, 일본의 지도부는 취하지 않았다.

미국은 세계정세를 주시하면서, 일본과 너무 빠르지 않은 단계에서 전쟁을 할 결의를 굳혔다. 중국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할 결단을 하지 못했던 일본으로서, 대미관계는 수복(修復)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전쟁은 불가피했다. 대동아전쟁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이다. 일본의 지도부는, 이것을 통상적인 전쟁(自衛를 위한 전쟁)으로 생각했으며, 국제법에 위반한다는 의식은 없었다. 일본군은,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그밖의 다른 곳을 점령했다. 교전국의 식민지를 공격·점령하는 것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도 없다(침략이 아니다)는 이해를 했다.

일본의 점령지에서, 일본군이, 가지가

지 피해를 주었다. 예를 들면, 민간인에 대한 폭행이나 학살, 현지통화의 군표와의 강제적인 교환 등. 이같은 행위의 일부는, 전쟁범죄로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강화조약 때 배상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미해결의 문제(가령 軍票의 문제)도 남아 있다.

統治者の 責任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대만, 한국, 북조선과의 사이에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일본은 한국과, 1965년에 일한(한일) 기본조약을 맺고, 배상을 실시했다. 북조선과 상호간에 조약이 맺어질 경우에, 한일기본조약이 베이스가 될 것이다.

한일병합 후의 한반도 사람들에게는, 대일본제국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병역도 면제되었었다. 대신에, 다수가 징용을 당하고, 일본과 카리후토(樺太: 당시, 현재의 사할린스크 남반부)로 끌려가 귀국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전쟁말기에는 병역도 과해져서, 일본군이 되어 싸운 사람들도 있다. 대만에서도 다수가 일본군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전후, 일본국적을 잃어, 은급(恩給: 연금)이나 보상(補償)의 대상외가 되었다.

은급이, 일본국의 공무에 진력한 일에 대한 보상(報償)이라면, 당시의 일본인은 동등한 그 권리를 가지는 것일 텐데, 전후의 국적으로 급부를 제한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된다.

80년대 후반에는, 중군위안부의 논란도 일어났다. '강제연행'의 사실이 있었

는지 아닌지는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업자가 주로 한반도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안부를 모아가지고 전쟁지구로 보낸 것은 확실한 일일 것이다. 일본국적을 가진 주민의, 보호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일본의 통치자에게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日本の 獨自的인 歴史認識도 필요하다

이 같은 전쟁은, 대일본제국이라는 국가가 행한 행위이다. 이 국가는 해체했다. 이 국가의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나 책임을 떠맡을 주체는, 그 국가의 정통의 후계단체인 일본국의 국민 이외에 없다. 전쟁책임을 추궁 받으며, 떠맡을 주체는, 모든 일본국민인 것이다. 전후에 태어나 전혀 전쟁에 관련되지 않았으며, 개인으로서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국민의 책임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우선, 정부의 행동으로서 나타난다.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배상을 실시하며, 전후질서를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일이 전쟁책임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책임은, 거의 완료되었다고 말해도 된다.

그렇지만, 전쟁책임을 논란이 언제까지나 재탕 삼탕되는 것은, 전쟁책임을 떠맡을 주체인 일본국민이,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국민이, 역사적인 과거를 공유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노력과 불가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있었던

전쟁도, 자신들에게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같다. 그런 전쟁에 대해서, 확실히 태도를 취하며, 역사로서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재료로, 일본과 일본인을 비난하는 언설(言說)이 범람한다. 중군위안부나 강제연행의 개인보상과 같은, 새로운 재료도 출현한다. 일본국민은 혼란된다.

여기서 빠져들기 쉬운, 두개의 태도가 있다. 하나는 어떻게 사죄하고 보자는 태도. 역사적 사실을 잘 확인해보지도 않고, 사죄를 하며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나는 책임이 없으며,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데,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을, 사죄할 수는 없다. 사죄를 하며 당장 그 자리를 속여 넘기는 것 같은 일은, 가장 비열한 태도다. 또 하나는,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쪽으로 가서 서는 것이다. 전쟁책임을 추궁하기만 하면 양심에 거리낄 일도 없으며, 안심이 된다. 나에게 책임이 없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점에서, 사죄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양쪽 다, 마찬가지로 불성실하다고 생각한다.

사죄를 하든지, 추궁을 하든지 간에, 혼란은 깊어질 뿐이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쟁책임이란, 일본국민이 과거의 전쟁을 나의 일로서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을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쟁을, 역사로서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유도 없이

사죄를 한다면, 그 어떤 역사도 공유하지 못한다. 무작정 추궁만 한다면, 추궁당하는 쪽에만 과거를 밀어붙이는 일이 된다.

역사는 일본국민의 긍지와 아이덴티티의 문제라고 한 점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會)'을 나는 평가한다. 역사가 다양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선분(線分)은, 국가/개인에게서 국가/개인에게로, 무수히 줄이 쳐져 있다. 이것을 하나로 수렴(收斂)할 수는 없는 일이며, '유일한 바른 역사인식'이 문제인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 안에서, 앞으로의 평화와 국제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쪽에 가서 서는 일이다. 거기에는, 관계 여러 나라의 역사인식과 조화하면서도, 일본 독자적인 역사인식이 베이스가 될 것이다. (中央公論 2003년 2월호 '日本國民が果たさねばならぬ責任とは' 번역 이흥우)

하시즈메 다이사부로오(橋爪大三郎): 1948년 神奈川県 출생. 東京대학 대학원 社會學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東京工業대학 工學部 교수(社會學)를 거쳐 1996년부터 현직(대학원 교수). 저서 '그 다음의日本國으로', '日本人은 宗教와 戰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島田裕巳와 共著), '天皇의 戰爭責任'(加藤典洋씨, 竹田青嗣씨와의 共著) 등.